

보도일시	2023. 4. 7 (금) 10:00	배포일시	2023. 4. 7 (금) 10:00
담당부서	농지은행처 농지사업부	책임자	부장 방규현(061-338-5881)
		담당자	대리 이진오(061-338-5887)

농어촌公,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연장

- 자격 요건 완화하여 4월 28일까지 연장 접수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7일 청년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을 지원을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창업농을 포함해서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으로 신청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오는 28일까지 접수 기간을 약 1개월 연장한다.

접수가 완료된 후 사업대상자 지원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19일까지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조건 및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접수 가능하다.

'23년 신규 선정된 청년창업형후계농의 원활한 농지 확보를 위해 접수 기간 연장 및 대상자 신청자격 완화에 따른 수정사항을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기존	변경
신청기간	2023.03.20.~ <u>03.29(10일간)</u>	2023.03.20.~ <u>04.28(40일간)</u>
신청자격	<u>농지취득 이력이 없는</u>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 *사업대상자 지원 순위에 따름
대상자 통보	<u>2023.04.21.</u> 이후 대상자 통보	<u>2023.05.19.</u> 까지 대상자 통보
지원순위*	① 청년창업농 ② 2030세대	① 신청당시 농지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농 ② 신청당시 소유농지가 없는 청년농 ③ 신청당시 소유농지가 0.5ha 이내인 청년농

* 지원순위 내에서 신청자가 겹칠 경우 ① 청년창업농, ② 2030세대로 세부 순위 설정

** 세부순위까지 신청자가 겹칠 경우 세부 평가 항목에 따라 선정



농업의 미래, 청년농에 맞춘!

2023년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선임대후매도 사업이란?

영농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을 시행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 농지은행

청년농업인이 확보한 농지를 공사에 구입요청 1

농지소유자 > 농지은행

2 농지소유자로부터 공사가 희망농지매입

청년농업인 <-> 농지은행 3

공사와 청년농 간 계약체결

4 농지은행 > 청년농업인

임대료 및 매매대금 상환 후 공사가 청년농에 소유권이전

신청기간

2023. 3.20.(월) ~ 4.28.(금)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신청자격

만 39세 이하 청년농으로서 맞춤형농지지원 지원한도 내에 있는 자
(단, 주소지가 매입 예정농지와 동일 및 연접 시 군 구 또는 직선거리30km 이내 해당하여야 함)

지원한도

1.0ha 이내(영농경력* 2년 이하는 0.5ha 이내)

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7770

홈 페이지 www.fbo.or.kr

